

4차 정책토론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2021년 5월 6일(목) 오후 2시

 YouTube 최혜영TV 함께혜영



주제발표

좌 장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1〉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

-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발제2〉 탈시설·최중증장애인의 소득·노동 정책 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토 론

-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유은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자기주도지원부 부서장)
- 권오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 최해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공동주최 :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약자의 눈

공동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장애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웰페어이슈,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법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식 순

- ▶ 좌장 : 김경미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수화통역 : 윤남, 이현정

	시간	내 용
사 전 행 사	14:00~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 공동주관 단체장 인사말 ▶ 국회의원 인사말
토 론 회	14:20~14:40	<발제 1> ▶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 -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14:40~15:00	<발제 2> ▶ 탈시설·최중증장애인의 소득·노동 정책 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아학협의회 이사장)
	15:00~15:40	<지정 토론> ▶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유은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자기주도지원부 부서장) ▶ 권오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 최해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15:40~15:55	▶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15:55~16:00	▶ 폐회 및 정리

목 차

인 사 말

- 김상희 (국회부의장) 9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3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5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27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9

주제발표

-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 33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탈시설 최종증장애인의 소득·노동 정책 제안 53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토 론

-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85
- 유은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자기주도지원부 부서장) 91
- 권오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95
- 최해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97

부 록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등 68인) 103

인사말

- 김상희 (국회부의장)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4회차에 접어든 오늘 토론회의 공동주최를 맡아주신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성주,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 눈’, 그리고 함께해주신 여러 공동주관 단체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과 도란도란의 장애인 전원이 탈시설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폐지됐습니다. 100명이 훌쩍 넘는 장애인 전원이 시설을 벗어나 자립을 이룬 이 사례가 장애인의 탈시설지원제도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날 마음을 먹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족들의 반대입니다. 가족들이 시설을 벗어난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과 지속적인 공적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결국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장애인의 탈시설을 막거나 더디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시설을 벗어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시장이 위축되어 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는 더욱 적어진 상황이지만,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폭넓은 지원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곳에서 1:1 지원만으로도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이뤄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발제를 해주실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님, 박경석 전국 장애인야학 협의회 이사장님, 그리고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실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잘 듣고, 장애인 개인별 맞춤 소득에 대해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어느덧 4회차 토론회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과 고용, 개인별 지원체계를 다룹니다. 탈시설 후 자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고용 그리고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 수급자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19%입니다. 전체 인구의 수급자 비율이 3.6%인 것과 비교해볼 때, 장애인의 소득과 고용 문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전제조건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소득과 고용을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교육이 선행되어야 안정된 고용과 소득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을 통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립을 위해 교육을 받아도 현장에서 적용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탈시설 장애인 중 근로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채용을 권고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마련되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어 있지만, 기업 측은 여전히 채용 대신 매년 큰 금액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의무채용을 강요하기보다 다양한 직무개발을 통해 장애인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면 근로 지원체계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취업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법과 제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입니다. 탈시설과 관련해 개인의 욕구가 잘 반영되고 개인별 지원체계가 맞춤형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근로 지원체계 구축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약자의 눈으로 시선을 맞추고 장애인 모두가 탈시설의 근본적인 목표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연구단체 <약자의 눈> 그리고 김민석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김상희 부의장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최혜영, 장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권리보장에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 ‘약자의눈’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탈시설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요구,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별 전환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환 준비 단계에서 최종 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용보장 욕구가 소득지원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많은 장애인이 시장고용 진입에 지속적으로 실패하면서 나타나는 실망실업의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때문으로 보입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탈시설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도 소득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행을 위해 정착 지원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탈시설 장애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 최근 3년간 7,869명이 시설을 퇴소했는데 탈시설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323명, 주거 지원을 받은 경우는 1,73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장애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습니다. 심지어 대전·울산·세종·충남은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편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탈시설 지원대상 장애인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중앙정부-광역시도의 탈시설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주택, 소득, 노동 등 여러 차원에서 조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의견들을 세심히 듣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4차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김민석.김성주.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혜영.장혜영 국회의원님, 「약자의 눈」과 공동주관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 여러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자립과 탈시설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일자리, 노동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장애인별 자립욕구와 함께 설계될 수 있는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동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장애인을 배제하도록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인구 고용률 60.2%에 비해 1.7배 낮습니다. 더욱이 장애인은 2020년 기준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 2/3에 가까운 63%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전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인구의 경우, 37%) 대부분의 장애인이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경우는 일반 기업 등에 취업하기도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실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자립과 탈시설이 이루어지도록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와 충분한 재원이 필요로 합니다. 현재는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체험주택을 만들어 시설장애인들에게 자립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적 형태보다는 여러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된 지원체계가 없어 다시 시설생활을 선택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올해 정부는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설립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하고, 재대로된 기능을 하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개인별 탈시설 지원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의 노동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최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토론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을 위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 토론회를 함께 주관 및 공동주최해주신 장애인 단체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들의 개인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장애인들이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22조는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등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명시는 했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그 의미가 깊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는 물론 탈시설·최중증장애인의 소득·노동 정책 제안을 검토하는 하는 등 실질적인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이 마련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논의와 방안을 제도화해서 거주인들의 의사에 기반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2.6%에 비하면 4.7배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예산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해왔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앞으로 공평하고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앞으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성과에도 안주하지 않고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힘들고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현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장애인 등 소외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우려가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복지서비스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한 장애인의 하루를 어떻게 불편함 없이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느냐’ 단 하나입니다.

많은 정책과제에서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는 그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들에 있어 개인별 지원 서비스에 대한 고려는 모든 장애인 지원 정책에 앞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토대입니다.

헌법에는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권리를 말하고 있고 정부는 그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에 중요한 전환을 맞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4회 「소득·고용·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속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김상희 부의장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 김성주,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장혜영 국회의원님, 약자의 눈을 비 롯한 여러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은 오랜기간 중요한 과제로 여겨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또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은 거주시설을 벗어나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소득·주거·근로·일상생활이 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자율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탈시설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득·의료·주거·고용보장은 국가 및 사회에서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과제입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탈시설 장애인 보장, 노동을 통한 제도 강화를 기반으로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 부천시(정)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본 한 초등학생이 쓴 ‘장애인의 날’ 5행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장 : 장차 나비가 될

애 : 애벌레는

인 : 인간들이 무관심한 사이에도

의 : 의지를 가지고

날 : 날아가는 꿈을 꾸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꿈과 의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모든 장애인이 자신만의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네 번째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최혜영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소속 의원님들,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장애인의 날이 41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속 일부 장애인들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내 장애인거주시설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전쟁고아 시설의 아동들이 1970년대부터 성인이 되어 퇴소함에 따라 전환되어 확대되었는데, 1988년 온 도시가 올림픽에 열광할 때 시설은 행사를 위해 도심 외곽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며 지금의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초까지 장애인거주시설은 주로 대규모 형태로 설치되며 장애인의 개인별 권리와 자율성은 점차 무시되고, 획일화된 삶은 더욱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는 높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학대 사건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주거, 의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득, 고용과 같은 개인별 지원체계도 선행되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상황에서의 장애인 정책과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저도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서비스를 결정하는 종합조사표 지표가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생활실태를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양팔과 다리가 마비된 뇌병변 1급 장애인이 1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지표만으로 활동지원시간이 감소하여지는 등의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대책과 방안들이 논의되어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해답이 명확하게 보이기보다, 넘어서야 할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길을 모두가 함께 나선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꼭 도착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네 번째 순서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 김성주,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장혜영 의원님을 비롯해 공동주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탈시설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장애인에게 어떻게 개인별 지원을 수립할 것인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개인의 욕구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삶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와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행동 주체로 정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개인별 지원체계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제도적으로 마련된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연결하여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가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22조(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의 수립)에는 소득지원, 주거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탈시설 장애인의 일련의 지역사회 삶을 위한 지원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탈시설 이후의 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환 준비단계에서부터 최종 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함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은 제22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비스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한이 강화되고, 든든한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의 실재를 살펴보고,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탈시설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시설은 존엄한 삶이 깃들 수 없는 공간입니다. ‘자유’가 아닌 ‘통제’가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무시되는 집단적 공간에서, 나의 존엄이 일상적으로 훼손당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 한 채 통제된 삶을 장기간 강요받게 되면, 당연히 시설 밖의 삶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상하지 못 하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탈시설 ‘욕구’를 묻는 것은 사실상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수년간 정부는 공급자 중심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의 환경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이뤄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탈시설 지원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탈시설 의사와 욕구만을 묻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시설 거주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계획과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별 지원 방안 마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필수적 요소는 주거와 더불어 ‘소득’과 ‘노동’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 사항은 ‘소득보장(48.9%)’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전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로 전체인구 수급율에 비해 5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빈곤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탈시설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및 장애인연금 수급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가 이뤄져왔지만, 그 이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로 탈시설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은 익히 알려져왔습니다. 만일 ‘소득보장’이 어렵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권리로써 적정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소득·고용’ 영역에서의 문재인정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4차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경미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김기룡 교수님과 박경석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토론을 맡아주신 오욱찬 위원님과 유은일 부서장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존엄한 삶을 위해 저와 정의당은 그 과정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중증장애인들의 서울시청 앞 노숙 농성과 삭발 투쟁, 한강대교 기어가기 투쟁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0년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연금의 제도화는 장애인복지가 집단적 관리·통제가 아닌 개인별 지원체계로 변화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장애인정책국 전체 예산 3조 6천억원 중, 장애인활동지원은 41%인 1조 5천억원, 장애인연금은 23%인 8천 3백억원으로 나타납니다. 예산의 양적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상당수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와 같은 개인별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자립생활이 머나먼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을 일대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나와 같은 최중증장애인은 24시간 항시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그것을 도와주지?’, ... 그런데 머나먼 꿈인줄 알았던 상상은 어느새 현실이 되어있습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합시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도 이제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로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이것이 머나먼 미래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의 현재로 만드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공동주최로 함께 해주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고영인, 강선우, 김월이, 서영석, 최혜영 의원님,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 국회의 원연구단체 ‘약자의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연속토론회와 이후 입법 과정에서도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제발표1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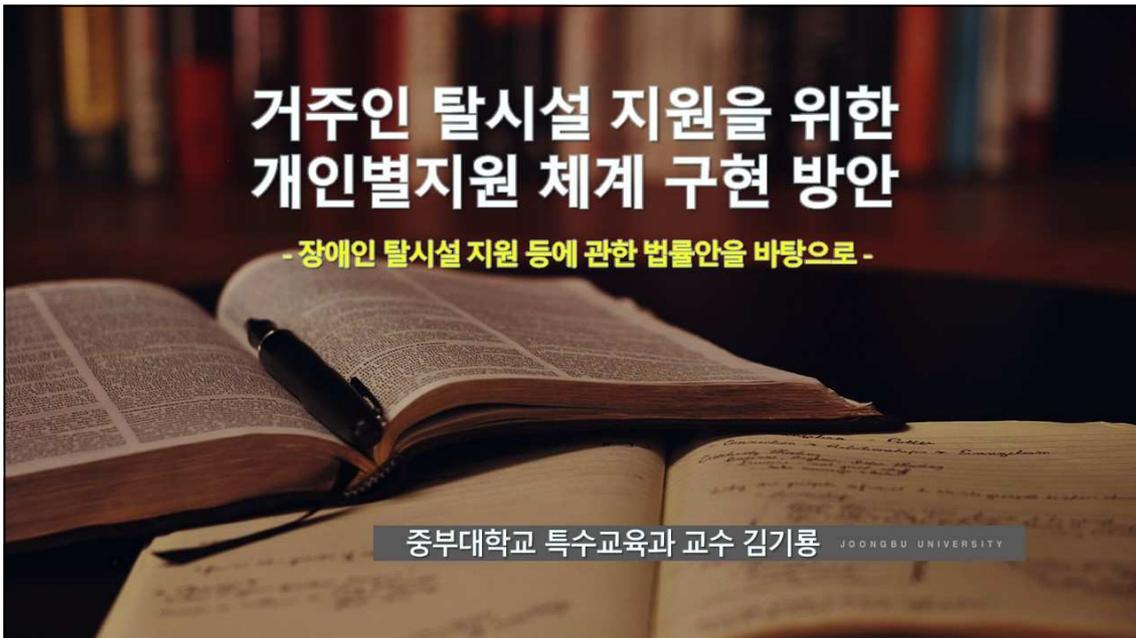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발 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

김기룡 ||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거주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개인별지원 체계 구현 방안

발표 순서

I
법률안에서의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II
이슈별 검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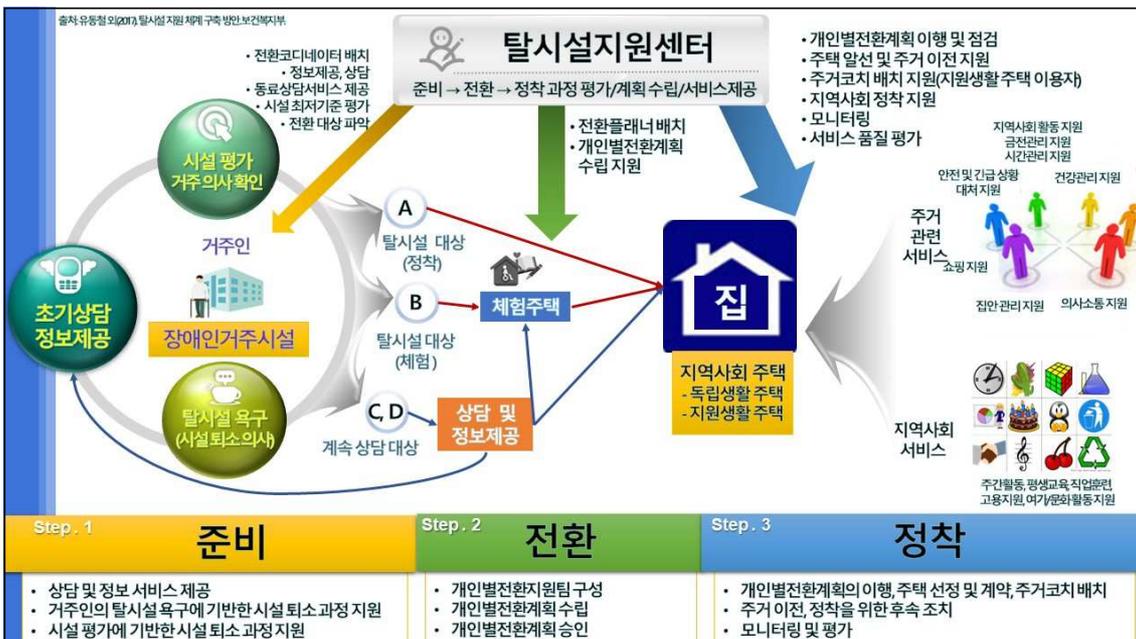
- 1. 개인별탈시설지원계획의 구성
- 2. 공적 서비스에 대한 판정
- 3. 주택에 대한 지원
- 4. 탈시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 파악 및 의견 반영

III
개인별탈시설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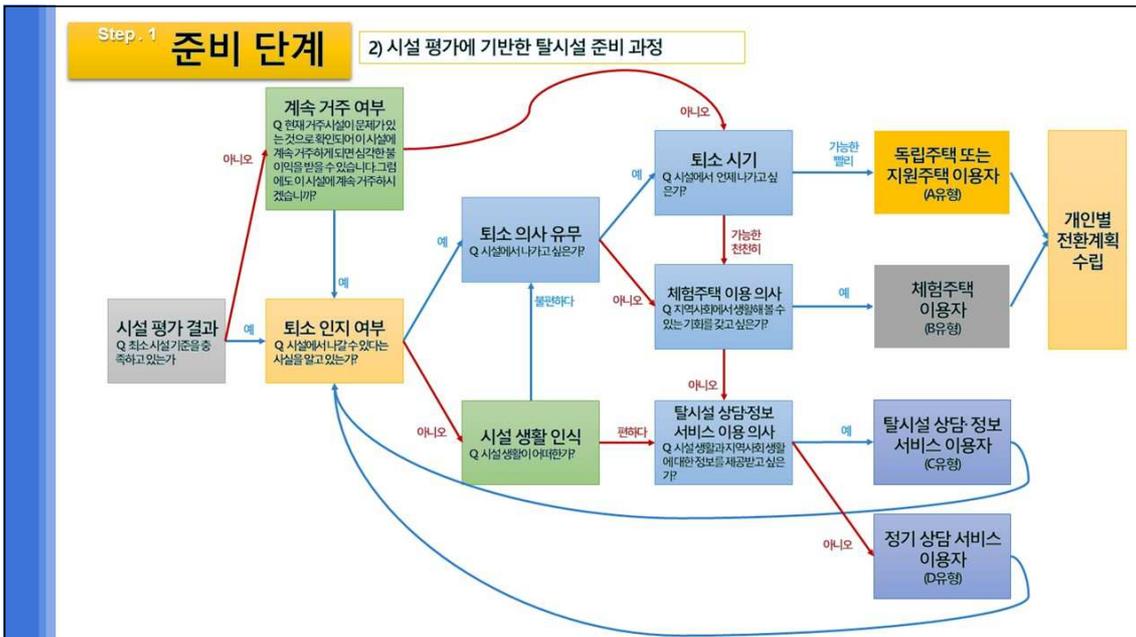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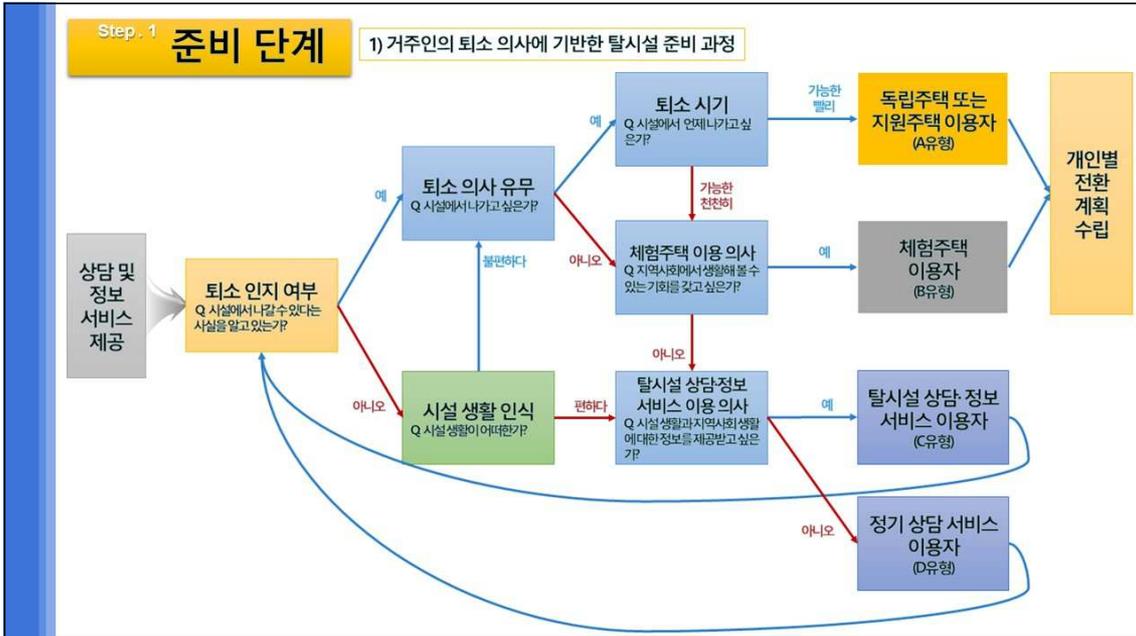
거주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개인별지원체계 구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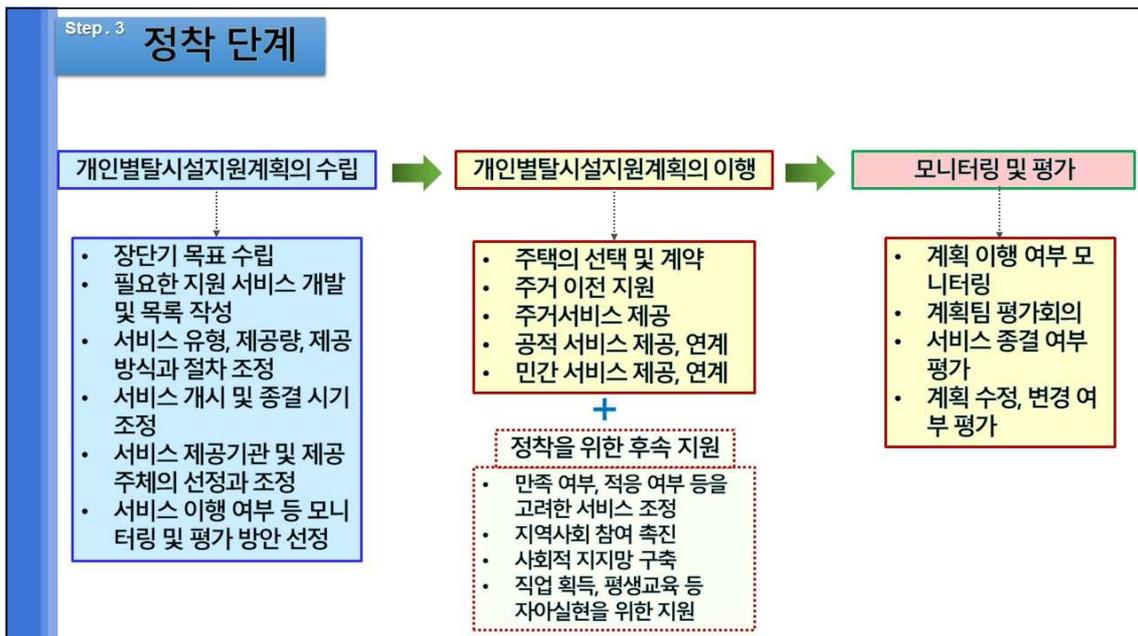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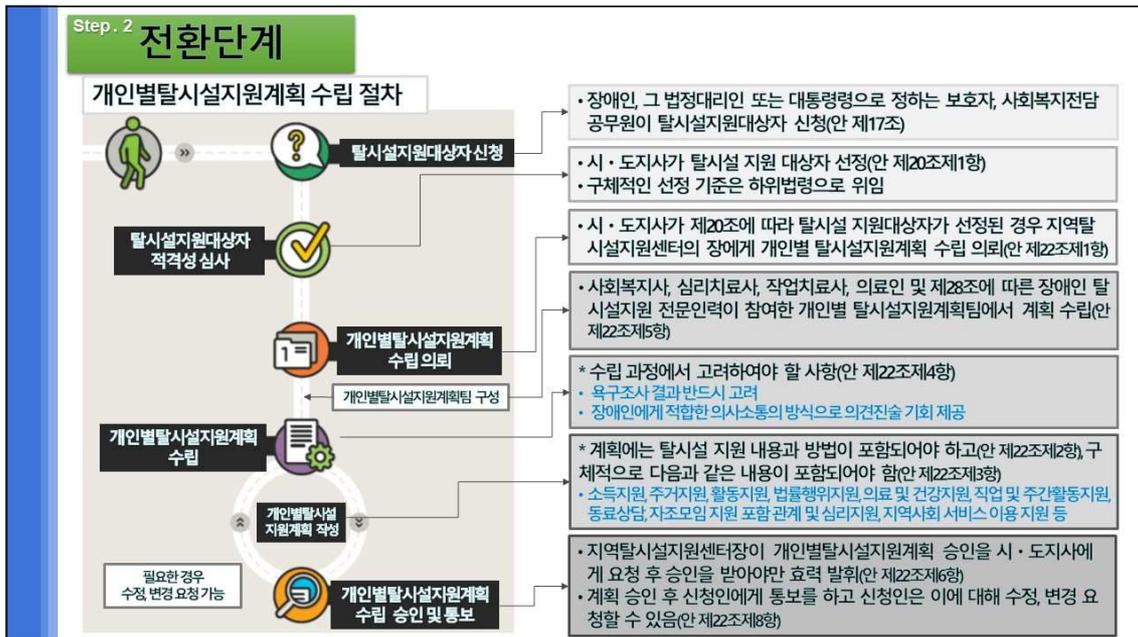
법률안에서의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법률안에서의 개인별
탈시설 지원 내용
- 단계별 탈시설 지원 절차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1. 개인별탈시설지원계획의구성

법률안의 내용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2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 ②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탈시설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에는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욕구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⑤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은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료인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탈시설지원 전문인력이 참여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팀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의 방법·절차·내용,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수정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탈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과 방법 제시
-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포함
- 욕구조사의 결과 고려
-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료인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탈시설지원 전문인력 등을 통한 팀 접근
- 구체적인 방법, 절차,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 개인별탈시설지원계획의구성

법률안의 내용을 토대로 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 계획안의 형식

- 당사자용으로 매우 간단한 양식으로 작성하고, 목표/서비스 유형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양식으로 제시

미래의 나			
 내가 사는 곳(집)		 내가 일하는 곳(직장)	
내가 사는 집의 종류		미래의 나의 직업	
집에서 주로 하는 일		내가 주로 하는 일	
여기서 지원되는 서비스		여기서 지원되는 서비스	
이동 수단 쇼핑 지원되는 서비스		 지역사회 여가, 문화, 체육, 예술 지역사회 참여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1. 개인별탈시설지원계획의구성

법률안의 내용을 토대로 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 계획안의 형식

		지원 계획 수립					
장기목표(2년 이상)	목표1						
	목표2						
	목표3						
단기목표(6개월 또는 1년 이내)	목표1	서비스 유형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전환일정	투입기간	운영방법	점검계획
	목표2						
	목표3						
주거코치 서비스		서비스 유형	구체적인 직무	지원일정	투입기간	운영방법	점검계획
점검 또는 평가 계획		유형	점검 주기	점검 주체	점검 도구		
가족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가족구성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웃과 친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사회 단체(교회, 클럽 등)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용자가 지역 기업, 서비스, 기관 등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가?			
서명							
전환플래너 서명: _____							
거주인 서명: _____							

비전에 따른 목표 중심으로 서비스 구성

- 장기목표: 향후 2년 후 변화(성취)하고자 하는 기대
* 목표는 개인의 욕구, 거주하게 될 환경,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등에 기반하여 제시
- 단기목표: 1년 이내 변화(성취)하고자 하는 기대
* 단기목표는 장기목표에 기반하여 구성하되, 활동 장소, 서비스별 이질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제시
- 서비스 목록은 단기목표에 따라 배치, 구성
- 주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목록은 별도로 제시
- 점검 또는 평가 계획은 목표 및 서비스 내용에 따라 조정
- 가족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자연적 지원은 목표 달성 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1. 개인별탈시설지원계획의구성

법률안의 내용을 토대로 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 계획안의 형식

목표 설정			
장기목표(2년 이상)	목표1		
단기목표(6개월 또는 1년 이내)	목표2		
	목표3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서비스 유형	제공 여부 지원 내용 지원 시기 지원 방법 지원 기관 고려사항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관계 및 심리지원(자조모임 포함)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기타()			
기타()			
기타()			
점검 또는 평가 계획			
유형	점검 주기	점검 주체	점검 도구
가족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가족구성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웃과 친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사회 단체(교회, 클럽 등)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용자가 지역 기업, 서비스, 기관 등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가?		
서명			
전환을제너 서명: _____			
거주인 서명: _____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따라 구성

-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기반(중심)의 지원 계획으로서의 가치 제고
- 현행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의 구성 방식 활용, 용이성 존재
- 단, 목표와의 기능적 관계 고려 어려움

2. 공적 서비스에 대한 판정

이미 자격 기준이 고지된 공적 서비스만 적격 유무 및 제공량 평가
vs.
별도의 권한을 가진 기관(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직접 평가

탈시설법률안에 따른 제공 가능한 서비스

- 소득지원
- 주거지원
- 활동지원
- 법률행위지원
- 의료 및 건강지원
-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 동료상담
- 자조모임 지원 포함 관계 및 심리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서비스 제공 방식

- 소득수준, 장애정도 등에 따라 자격 기준이 있는 공적 서비스
-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제공 가능한 공적 서비스
- 그밖의 민간 서비스

→ '20년 이후 공적 복지서비스는 서비스종합판정도구에 따라 제공 여부 및 제공량 결정(서비스 유형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2. 공적 서비스에 대한 판정

스웨덴의 LSS법 사례 개인 맞춤형 공적 서비스 지원 체계

LSS 기반 특별한 사회 안전망

- 사회서비스 LSS(활동지원, 주거서비스 등)
- 고용지원: 지원고용과 보호고용
- 소득보장: 장애수당, 장애연금, 아동수당, 차량수당, 보조기기수당, 주거수당 등

기본적인 복지 제도

- 사회서비스 SoL(돌봄, 주택 등)
- 고용지원: 일자리 지원
- 소득보장: 각종 공적 연금 및 수당 제도

**** LSS 신청 절차**

지역구청(District Council) 매니저에게 LSS 서비스 신청

↓

서비스 판정을 위한 조사 실시

↓

담당자에 의한 서비스 적격성 및 서비스 내용 판정

↓

서비스 제공

**** 기관 중심의 일원화된 공적 서비스 지원 체계**

- 서비스 신청/접수, 조사, 판정 및 연계: 지자체 공무원
- 서비스 제공: 공적기관 및 민간 위탁 기관 등에서 제공
- 서비스 구매와 계약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지자체에서 통제
- 지자체는 서비스 유형별로 기관을 설치(위탁)하고, 장애인은 해당 기관에 가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으면 됨
-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공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것임

- 욕구 중심 판정 체계 도입
- 지자체 공무원이 장애인 개인의 요구하는 서비스를 직접 판정하는 제도 도입
- 공적으로 통제된 서비스 제공기관 구축 및 활용 체계 도입

3. 주택에 대한 지원

사실상의 지원주택(지원생활서비스) 제공을 명문화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6조(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안정적인 주택 제공

+

→ 자신이 선택한 주택에서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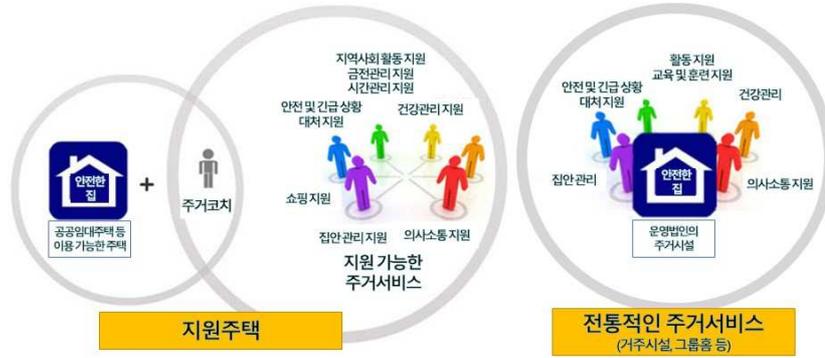
= 지원주택 기반의 주거생활 지원 근거 제시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3. 주택에 대한 지원

사실상의 지원주택(지원생활서비스) 제공을 명문화

**** 기존 전통적인 주거서비스와의 비교**



3. 주택에 대한 지원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택 옵션 개발 필요



- 다양한 형태의 주택 유형 고려 (지원주택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거 모형 존재)
- 주거 제공 방식 고려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닌 임대료 지원, 주거수당 지급 등 다양한 주택 제공(확보) 방식 제공)
- 주거 환경 개선 및 유지 지원 방식 고려 (주택개조 지원의 범위와 지원 방식 등)
- 주거서비스 지원 방식 고려 (입주형, 순회+입주, 순회형, 선택형 등)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3. 주택에 대한 지원

- 주거코치를 통한 주거서비스 내용과 그 범위의 조정

유형	주요 서비스(주거코치의 직무)			
	정보 수집하기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작성하기	평가하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주택 알선하기	주택서비스 신청하기	가사 유지· 관리하기	식사관리하기
	외모관리하기	쇼핑하기	시간 관리하기	의사소통지원하기
	이동지원하기	금전관리하기	심리상담하기	동아리· 모임 연계하기
	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하기	권리와 책무 이해하기	인권침해 대응하기	건강관리하기
	24시간 긴급 대응 지원하기			
선택서비스	집안관리하기	친구하기	살림하기	가정 내 지원하기
	개인 응급 시스템 지원하기	가정 내 교육서비스 제공하기		

* 음영 부분은 활동보조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말함

- 주거코치의 배치 기준, 직무에 따른 자격 다양화와의에 따른 양성과 배치 문제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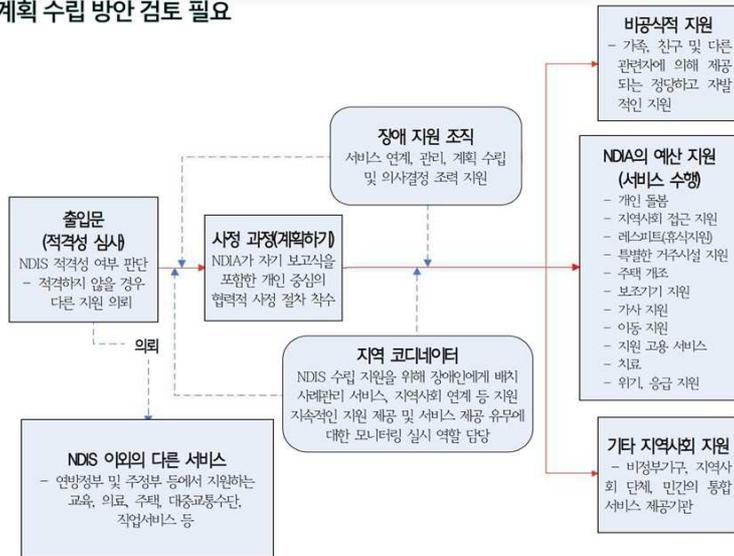
4. 탈시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 파악 및 의견 반영

서비스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 계획 수립 방안 검토 필요

이를 촉진하기 위한 개인 중심 협력적 사정 절차 수립,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옹호 조직의 조력 등 고려 필요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 (NDIS) 지원 절차

자기 보고식, 개인 중심의 협력적 사정 절차 수행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4. 탈시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 파악 및 의견 반영

* 검토해볼 문제

1)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개별화된 팀 구성 필요

지원팀은 ISP의 수립, 이행, 모니터링을 목표로 하는 그룹

지원팀은 서비스와 지원 수혜자, 그 부모 또는 가족,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장애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 인력, 지원 코디네이터, 기타 전문가 및 계획수립에 관계될 수도 있는 인력으로 구성

- ISP 수립에서 지원팀의 책임

⇒ 무엇이 장애인에게 중요하고 이익이 되는지 확인.

⇒ 무엇이 장애인의 강점에 적합한지 확인.

⇒ ISP가 장애인 및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기존의 지원 구성원들에게 유의미하도록 보장.

⇒ ISP가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하고 장애인의 강점에 적합하며 명확한 목표, 목적, 지원 전략 및 성과를 제공하도록 보장.

⇒ 각 지원 전략의 이행에 대한 책임자 지정.

ISP가 수립되면 지원팀은 그 이행 및 모니터링도 담당

ISP는 삶의 질 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목표와 성과는 구체적인 삶의 질 영역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

4. 탈시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 파악 및 의견 반영

* 검토해볼 문제

2) 당사자의 개인적 목표 설정을 위한 노력 필요

* 당사자의 개인적 목표를 파악하기 위한 지원팀의 전략

⇒ 당사자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일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자신의 선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바탕으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 당사자와의 접촉 및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그 반응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당사자의 말과 바디 랭귀지에서 그/그녀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당사자가 어떻게 의견을 표현하는지를 관찰하고 그러한 의견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

⇒ 자신의 개인적 의견과 판단이 논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선호하는 목표다.

⇒ 질문은 가능하면 “예”와 “아니오”만으로는 답할 수 없고 여러 단어를 사용해야 답할 수 있는 개방형이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은 더욱 많은 정보를 이끌어 내며 이는 당사자의 설명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이해로 이어진다.

⇒ 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을 완료하고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당사자가 선호하는 의사교환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4. 탈시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 파악 및 의견 반영

* 검토해볼 문제

3) 장기목표(목적) 및 단기목표(실천 가능한 목표)의 구체화 필요

* 목적과 목표의 진술: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절차의 관점보다 이용자가 얻게 되는 이익의 관점에서 진술되어야 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 향상
사람: 나는 대중 교통을 이용할 것이다.
사람: 나는 내 아파트에서 살 것이다. - 생산성 향상
사람: 나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사람: 나는 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것이다. - 지역사회 참여 기회 증진
사람: 나는 헬스클럽에 다닐 것이다.
사람: 나는 교회에 다닐 것이다. - 장애인과 유사한 일상생활 패턴의 달성
사람: 나는 내 일상 스케줄을 세울 것이다.
사람: 나는 내 재정상태를 관리할 것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주거 생활 및 건강한 생활 환경 보장
사람: 존(아동)은 위탁가정에서 살기 위한 지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 나는 룸메이트와 살기 위해 OO아파트로 이사할 것이다. - 안정적인 가족 생활 및 관계 증진
사람: 나는 내 가족을 방문하길 원한다.
사람: 나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길 것이다. -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에 대한 최대한의 통제
사람: 나는 내 자신의 화장실을 선택할 것이다.
사람: 나는 내 자신을 위한 지원 인원을 고용할 것이다. - 또래 또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사람: 내 여동생은 나에게 쇼핑을 시켜주었다.
사람: 내 이웃은 내가 버스에 타는 것을 가르쳐줄 것이다. |
|---|--|

4. 탈시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 파악 및 의견 반영

* 검토해볼 문제

4) 개인의 강점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 강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

- ⇒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 ⇒ 무엇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 ⇒ 어디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싶으신가요?
- ⇒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 ⇒ 무엇을 해 드려야 마음이 편하고 불안하지 않으실까요?

* 개인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것들

- ⇒ 언어, 읽기, 글 쓰기, 자기지도, 시간 인식, 문제 해결과 같은 개념적 기술들.
- ⇒ 대인 관계, 책임감, 자존감, 시민 정신, 예의, 신중함, 사회적 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기술들.
- ⇒ 일상 생활 활동 (자기 관리), 직업 기술, 돈의 사용, 안전, 건강 관리, 여행/이동, 스케줄/일상 활동, 전화 사용과 같은 실용적 기술들.

* 이러한 강점과 자산을 알아낼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 ⇒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를 원하시나요?
- ⇒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 ⇒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일, 학교, 여가활동)
- ⇒ 이미 받고 계신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가족, 친구, 기타 서비스 기관)

*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

- ⇒ 독서와 글쓰기를 즐기시나요?
- ⇒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하시나요?
- ⇒ 취미나 재미로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 ⇒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의 어떤 면을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이 어떤 결 잘 한다고 말해주나요?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4. 탈시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 파악 및 의견 반영

* 검토해볼 문제

5) 서비스 욕구의 적극적 발굴, 파악, 수집, 개발 - Support Intensity Scale을 활용한 지원요소 파악

* 지원정도척도(Support Intensity Scale: SIS)
 ⇒ 기능적 수준에 따른 장애인의 능력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된 표준화된 검사 도구

*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맥락(개인, 지역사회, 직업, 의료 등)에서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도구

⇒ 미국 지적장애및발달장애학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에서 2002년 발달장애인의 지원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

⇒ SIS는 사람 중심의 지원 모델 시스템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적장애인의 지원 요구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음.

하위척도	문항수 (번호)	문항내용
가정생활	8(1-8)	·화장실 이용, 의복 관리, 음식 준비, 식사, 집안 관리 및 청소, 옷 입고 벗기, 목욕/위생/물단장, 가전제품 조작
지역사회 생활	8(1-8)	·지역사회 이동, 레크레이션/여가, 공공서비스 이용, 친구와 가족 방문, 좋아하는 활동 참여, 쇼핑과 구입, 상호작용, 공공건물 및 장소 이용
지원 요구 척도	9(1-9)	·타인과 상호작용, 의사결정 참여, 문제해결 전략 적용, 학습용 공학사용, 교육장면 접근, 기능적 교과 학습, 보건/체육 기술, 자기결정, 자기 관리 전략 학습
고용	8(1-8)	·직무 조정 접근, 직무기술 사용, 직장 동료와 상호작용, 감독관과 상호 작용, 과업 속도 완성, 직무 배치 변경, 고용주에게 정보와 지원 탐색
보건·안전	8(1-8)	·약물치료, 위험 피하기, 보건 간호 서비스, 보행과 이동, 응급 서비스 이용 학습, 식사 유지, 건강과 체력 유지, 정서적 웰빙 유지
사회	8(1-8)	·집 안 내 사회적 활동, 타인과 레크레이션/여가, 집 밖 사회적 활동, 친구 관계 유지, 개인 요구에 의사소통, 적절한 사회적 기술, 연애, 자원봉사 활동
보호·권리주장 척도	8(1-8)	·권리 주장, 금전과 개인 재정 관리, 자기 보호, 법적 책임, 단체 가입, 법률 서비스, 선택과 의사결정, 타인 권리 옹호
의료·행동 특별지 원요구	16 (1-16)	·호흡기계 보호, 식사 보조, 피부 보호, 기타 의료적 특별보호
행동 특별지 원요구	13 (1-13)	·외부 지향적 파괴, 자기 지향적 파괴, 성, 기타
계	86문항	

III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거주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개인별지원체계 구현 방안

Ⅲ.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과제 1 조기 집중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

탈시설 지원 대상자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자와는 달리

1. 특정 기한 내에 제공받아야 하고
2.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며
3. 주거비용, 생계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4.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서비스 신청과 이용 과정에서 장벽이 제거되어야 하고,
- 서비스간 칸막이가 제거되어야 하며
- 고비용 발생에 대한 막연한 부담으로 설계 자체가 금지되어서는 안 되며
-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최소한의 서비스에 불과

↓

- 시설 퇴소 전부터 정착에 이르는 특정한 기간 내에
- 집중적인 서비스를 비용 부담과 관계없이
-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Ⅲ.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과제 1 조기 집중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

특히 탈시설 지원 대상자의 개인 특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탈시설지원센터 등에서 공적서비스를 직접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고려 필요

- 공적서비스 제공 여부를 직접 판정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개인별탈시설지원계획은 개인의 상황과 욕구가 아무리 개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불가
- 탈시설 지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비스종합판정도구가 현행보다 더 개인 특성과 환경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화되거나,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공적 서비스 판정, 제공,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현실화될 수 있음
 - ✓ 예를 들어 탈시설 지원 대상자는 시설 퇴소 후 기존 보유자산 등의 부재, 직업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매월 150만원 이상의 생계비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이만큼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탈시설이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버림. 현재의 정착금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계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기존 공적소득보장제도 이용만을 고수할 수 없음
- 공적서비스 판정 권한이 부여되어야만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장려책이 될 것
- 공적서비스 판정 권한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장애인연금 액수, 주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존 자격 기준을 뛰어 넘어 탈시설 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서비스의 유형과 서비스의 제공량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함
- 특히 탈시설 지원 대상자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적/민간 모든 서비스를 하루빨리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만 하고, 개인별탈시설지원계획은 이러한 공공/민간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명시한 문서이어야 함

Ⅲ.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과제 2 유의미한 공적 서비스 확대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

- 소득지원
- 주거지원
- 활동지원
- 법률행위지원
- 의료 및 건강지원
-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 동료상담
- 자조모임 지원 포함 관계 및 심리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유의미한 공적 서비스

장애인의 욕구(요구, 기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수준

Ⅲ.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과제 2 유의미한 공적 서비스 확대



[그림] 스웨덴의 특정한 기능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법(LSS)에 의한 10가지의 공적 서비스

- ✓ 장애인에게 필요로 하는 유의미한 복지서비스 목록을 개발하고, 이중 공적으로 추진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개발해 나가야 함
- ✓ 또한 민간 차원에서 연계되었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 형태로 추진 가능한 것과 공적 영역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이를 공적 서비스로 개발하는 작업도 추진되어야 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Ⅲ.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과제 3 탈시설장애인의 참여 보장

-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개인별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비스 신청 과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과정,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한 이행 과정 등에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 협의에 기반한 계획 수립 즉 서비스 전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하고 있음
-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는 서비스 신청인이 자신의 욕구 수준을 직접 평가하여 제출하거나(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 정량 평가 이외에도 자신의 서비스 필요 정도에 대한 정성적 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과정을 보장하고(덴마크),
- 이를 서비스 적격 여부와 지원 수준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인력(코디네이터, 플래너)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개인별지원팀을 구성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 서비스 전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신청 과정, 개인별지원계획수립과정, 이행 과정, 평가 과정 등에 참여 보장
- 개인별지원계획의 법적 문서화 보장, 불복절차 보장 등

Ⅲ.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과제 4 기존 유사 지원 체제와의 통합성 고려 및 차별성 마련

정부의 장애인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등과의 통합성과 정합성을 고려하되, 탈시설 장애인의 긴급하고 특별하며 집중적인 지원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개인별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정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 2019년 7월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분야 우선 도입 후, 이동지원(20년), 소득·고용지원(22년) 분야로 확대



<장애인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흐름(3차 시범사업 운영)>

신청	장애판정	서비스 종합판정 및 심의·의결			서비스 이용
지자체 장애인 등록 신청	공단 (의학적) 장애등록 심사	공단 ① 서비스 지원조사	공단 ② 개인별 서비스이용계획 수립(민간·공공)	지자체 ③ 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이용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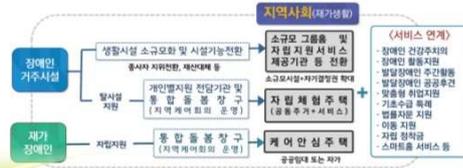
III.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과제 4 기존 유사 지원 체제와의 통합성 고려 및 차별성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모형]

[대상자별모형] -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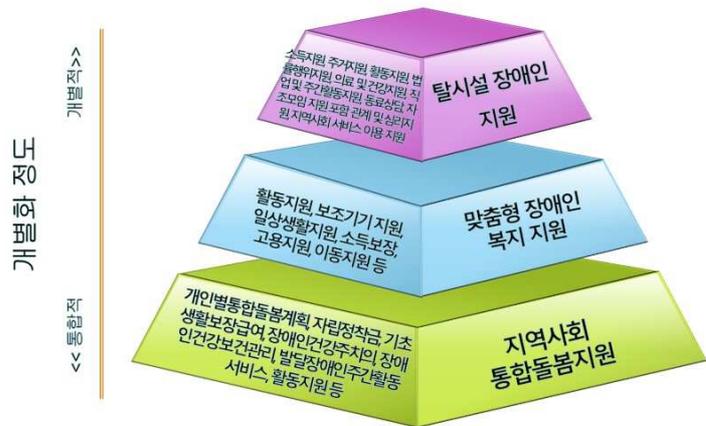
- 개인별 통합돌봄계획에 근거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 서비스 개인별통합돌봄계획 자립정착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활동지원 등
- 인프라: 거주시설 소규모화, 운영구조 변경 등 거주시설 전환선도사례개발



- 장애인의 활동 및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를 노인 요양 등 유사 서비스를 필요 하는 대상과 통합시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효율적인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도입하려는 의도(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돌봄 제공 대상자를 통합 관리)
- “돌봄”의 개념과 다소 이질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까지 모두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통합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역에서 “돌보주어야 할 대상”에게 제공되는 “수동적 서비스”로 전락시킬 우려 존재
- 장애인과 서비스 판정 담당자가 참여하여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케어회의에서 심의, 결정함으로써 개인 욕구와 환경 중심 판정 체계는 구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미 결정된 공적서비스 적용 대상 유무 판정 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기존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음. 따라서 충분한 공적 서비스가 전제되지 않는 한 공공+민간 협업을 근간으로 한 지원 체계는 무의미함

III.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과제 4 기존 유사 지원 체제와의 통합성 고려 및 차별성 마련



주제발표2

탈시설 · 최중증장애인의 소득 · 노동 정책 제안

박경석 (전국장애인아학협의회 이사장)



발 제

탈시설·최중증장애인의 소득·노동 정책 제안

박경석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0. 들어가며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¹⁾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사는 등록 장애인은 2,622,950명이다.

<표1> 장애인 추정 및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장애인 추정	-	2,683,477	2,726,910	2,668,411	-
등록장애인	2,137,226	2,611,126	2,646,064	2,580,340	2,622,950

주 : 1) 2008, 2020년 및 2011, 2014, 2017년 조사 방식이 상이함

2) 2020년 등록장애인: 2020. 5. 말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p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가난하다는 것이다.

<표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유형별 수급

(단위: %)

구분	2017년도	2020년도
생계급여	15.0	19.0
의료급여	16.2	25.8
주거급여	14.4	14.8
교육급여	1.4	1.8

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357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주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2) 제1차 의료급여기본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실태조사에서 장애인들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득보장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보장 욕구가 높게 나타나 2017년²⁾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실태조사에서는 2017년 조사에 비해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욕구의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3>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소득보장	38.5	41.0	48.9	28.9	52.9	46.5
의료보장	32.8	27.6	27.9	30.8	22.4	32.8
고용보장	8.5	9.2	3.6	6.5	5.6	1.5
주거보장	6.4	5.1	7.4	5.8	7.8	7.2
이동권 보장	1.8	3.0	1.5	1.0	1.1	2.0
보육·교육 보장	1.7	1.2	0.7	11.9	0.5	0.2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6	1.4	1.4	2.4	1.5	1.1
장애인 인권보장	2.7	2.5	1.9	6.5	2.5	1.1
장애인 인식개선	2.2	2.0	1.5	4.0	1.5	1.4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	1.2	6.0	2.5	1.6	2.3	2.8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참여보장	0.6	0.5	0.3	0.1	0.1	0.4
재난안전관리	0.5	0.3	0.1	0.0	0.1	0.2
기타	0.3	0.2	0.3	0.1	0.2	0.3
없음	1.3	-	2.0	0.5	1.7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소득에 대한 지원은 탈시설 장애인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장애인 중 48.9%가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용에 대한 욕구는 소득지원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미 많은 장애인들이 시장고용 진입에 지속적으로 실패한 경험으로 인하여 실망실업으로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노동을 통한 소득에 대한 기대는 더욱 낮게 나타난다.

2) 2017년 :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1.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

○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방안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8조³⁾에 장애인탈시설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탈시설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동법 제22조⁴⁾에 근거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할 때도 소득지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득지원 실행을 위해 동법 제25조⁵⁾에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지원서비스에 정착지원금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으로는 (1) 전체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2) 탈시설정착지원금, (3) 노동을 통하여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제도적으로 마련된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연결하여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제8조(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시설하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탈시설 장애인 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탈시설하는 장애인의 주거·소득·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조사 및 인권침해시설 제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22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탈시설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하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탈시설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에는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제25조(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라 탈시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지역사회 초기정착 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탈시설한 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배치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및 정착지원금 지급, 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소득지원정책 강화를 통한 탈시설 장애인 소득지원

○ 탈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의 욕구인 소득지원은 소득지원정책의 변화와 강화를 통해 소득지원이 필요하다.

<표4>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단위 : 원/매월)

구분	제도	수급자격	수급내용				
소득 보전 급여 제도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 중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¹⁾ 이 1~4급인 자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²⁾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 만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지급	구분		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300,000		
		차상위초과자 및 소득하위 70%		254,760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대비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이 지급기준액 이하인 국민	급여액 = 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급여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름				
추가 비용 급여 제도	장애수당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구분		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40,000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20,000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 장애인	200,000	150,000	150,000	70,000
			경증 장애인	100,000	100,000	100,000	20,000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만 18세이상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구분		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8~64세	80,000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18~64세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20,000	65세 이상	40,000

※ 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경우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애급여는 제외함
 1) 장애인연금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것이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과는 다름
 2)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산정은 「국민연금법」 제51조와 제52조에서 각각 규정함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표5> 거주시설/재가중증장애인 소득차이 (1인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급여	부가급여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없음	월30만원	없음	월2만원	월7만원
재가 중증장애인	1인가구 548,349원	월30만원	월8만원	월4만원	월20만원

<표6> 시설 중증장애인과 시설중증장애인의 소득차이 (1인가구, 생계급여대상자, 18~64세)

구분	금액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월 30만원
재가 중증장애인	월 92만8,349원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에 있다. 낮은 근로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소득보장의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탈시설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요구사항이다.

○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문제점으로 ▲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공통적으로 낮은 급여수준을 보인다는 것, ▲ 장애인연금은 장애 기준과 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⁶⁾

6) 「장애인 소득보장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처, 2020.4.2.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 OECD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0.6%로 1.9%인 OECD의 평균 장애인복지지출 규모의 1/3에 그치는 수준이다. 즉 대한민국이 GDP가 11위인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한 예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결정은 후순위라는 것을 소득분야에서도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전장연의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제시한 '표준소득'을 통한 소득보장

○ 전장연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 제시한 '표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전체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탈시설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다. 다음은 법안의 내용이다.

<p>제70조(소득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이를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고려하는 개인 소득 수준은 「장애인연금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p> <p>④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정하여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개인 소득이 없고 근로가 가능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제1항의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전액 지급한다.2. 개인 소득이 없으나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고용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1항의 표준소득보장금액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3. 개인 소득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제1항의 표준소득보장금액에서 개인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표준소득보장금액의 책정 및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핵심내용 : ①기초법 생계급여 + ②추가비용 = ③장애인표준소득보장금액</p> <p>*대상 : 만18세 이상(재학생 제외) 장애인.</p> <p>*적용 : 1)개인소득없고 근로불가 - 전액지급. 2)개인소득없고 근로가능 -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지급. 3)개인소득있는 경우 - 개인소득의 50% 감액 산정.</p>

(2) 탈시설정착금 강화를 통한 소득지원

○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탈시설 장애인에게 정착지원금(이하 탈시설정착금)을 제공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7,869명이 시설을 퇴소했으나 탈시설정착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323명, 주거 지원을 받은 경우는 1,733명에 불과했다.

○ 지난해 각 지자체로부터 탈시설정착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146명이었으며 시설 퇴소 장애인(2,697명) 대비 5.4% 수준이었다. 서울이 56명, 부산 18명, 대구 13명, 경기 16명 순으로 시설퇴소 장애인들이 정착금을 지원받았다.

○ 올해 시도별 탈시설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전북·경북·경남·제주이 1000만원, 인천·광주 8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충북 500만원 순으로 1인당 지급액을 편성했다.

○ 대전·울산·세종·충남은 시설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 탈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소득지원방안으로 유일한 것이 탈시설정착금이다. 탈시설정착금은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주거 마련과 생활용품 구매 등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최초로 당시 프리웰(구 석암재단) 향유의 집(구 베데스다요양원)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농성하면서 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2005년부터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시작이었다. 시행 초기에는 결혼이나 취업을 한 탈시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대체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 탈시설정착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국비 매칭펀드가 없기 때문에 시도별 편차가 크며, ▲비수급 장애인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고 수급자나 차상위에게만 지원하는 곳도 있다.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살림살이로 사용처를 한정된 곳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탈시설 정착금이 일정정도 초기의 소득지원과 지역사회 정착하게 필요한 금액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표7> 최근 3년간 장애인탈시설정착금 지원현황^{가)}

구분	퇴소 장애인 현황			탈시설정착금					
				'17년		'18년		'19년	
	'17년	'18년	'19년	지원금 (1인당/ 백만원)	지원수 (명)	지원금 (1인당/ 백만원)	지원수 (명)	지원금 (1인당/ 백만원)	지원수 (명)
총계	2,555	2,617	2,697	-	95	-	82	-	146
서울	371	336	299	12	40	12	22	12	56
부산	104	102	201	6	18	7	15	7	18
대구	68	62	81	10	9	10	6	10	13
인천	97	123	104	5	8	6	9	8	4
광주	109	78	126	5	3	8	4	8	3
대전	126	121	125	0	0	0	0	8	2
울산	52	34	30	0	0	0	0	0	0
세종	7	7	6	0	0	0	0	0	0
경기	545	576	528	10	4	10	11	10	16
강원	101	135	101	5	2	6.5	2	6.5	7
충북	131	157	161	4	4	4	4	5	5
충남	107	87	118	0	0	0	0	0	0
전북	103	122	109	10	1	10	3	10	7
전남	371	371	352	10	2	10	1	10	3
경북	120	160	145	10	2	10	5	10	5
경남	114	123	130	5	2	5	0	10	5
제주	29	23	81	0	0	0	0	10	2

<표8> 2020년 장애인탈시설정착금 지원현황^{가)}

지역	1인당 탈시설정착금	지원계획 인원	실제 지원대상 수	<단위: 백만원, 명>
				대기 인원 수
계	-	211	102	14
서울	13	70	33	0
부산	7	20	15	0
대구	10	7	7	4
인천	8	16	16	2
광주	8	14	6	0
대전	0	0	0	0
울산	0	0	0	0
세종	0	0	0	0
경기	10	17	4	2
강원	6.5	12	1	0
충북	5	4	2	0
충남	0	0	0	0
전북	10	10	6	0
전남	10	9	1	3
경북	10	13	2	0
경남	10	9	4	3
제주	10	10	5	0

7)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 2020.9.23.

8)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 2020.9.23.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표9> 탈시설정착금 지급 현황⁹⁾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시행 연도	지급 대상	신청 방법	탈시설정착금(1인)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서울	2002	○대상: 서울시 산하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기준: 국민기초, 차상위 ○기타: 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주민등록 이전일 기준)	○신청방법 - 퇴소 전: 신청서, 자립확인서(시설용), 퇴소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퇴소 후: 신청서, 자립확인서(시설용, 주민센터용), 퇴소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통장계좌 사본 ○신청장소: 시설 관할 자치구(시설→자치구)	149	12	22	12	56	13	71
부산	2017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만18세이상 장애인 ○기준: 국민기초, 차상위 ○기타 - 주택마련(월세, 보증금)자금 사용 - 해당 주거지에 2년 이상 거주 해야함 - 3년이내 타시설 재입소시 보조금 반환	○신청방법: 시설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시설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자치구·동	53	7	15	7	18	7	20

9) 지자체별 탈시설장애인 탈시설정착금지원현황, 장혜영의원실, 2021.4.29.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구분	시행 연도	지급 대상	신청 방법	탈시설정착금(1인)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대구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한 만 18세이상 퇴소 장애인 ○기준: 소득기준없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취업, 자립생활가정 입주 등 지역 사회 내 자립을 목적 - 일정 기간 자립하지 못하고 시설 재입소의 경우 보조금 반환 ○제외대상 : 공동생활시설 제외, 원가정복귀,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신청서, 시설퇴소증명서, 반납서약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예식장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증빙서류 등), 퇴소 후 1년이내 신청 ○신청장소: 자립주소(예정지) 관할 구·군에 신청 	41	10	6	10	13	10	22
인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심한 장애인 우선) ○기준: 소득기준없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보증금, 생활용품구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금 -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으로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 주택 퇴소시,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시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시설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구에서 자립여부 현장확인 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 ○신청장소: 시설 관할 자치구(시설→자치구) 	26	6	9	8	4	8	13
광주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광주지역 거주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한 18세이상 퇴소장애인 ○기준: 소득기준없음 ○기타: 임차보증금, 생활용품구입 등 자립 생활에 필요한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시설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장소: 시설 소재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자치구·동 	18	8	4	8	3	10	11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구분	시행 연도	지급 대상	신청 방법	탈시설정착금(1인)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대전	2017	○대상: 거주 시설 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기준: 소득기준없음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이내 - 주택마련(월세,보증금)자금 사용	○ 신청방법: 시설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시설소재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자치구·동	2	-	-	8	2	8	-
울산	-	<계획중> ○대상: 퇴소장애인 ○기타: 주택마련(월세,보증금)자금 사용	<계획중> ○신청방법: 시설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2017	○대상: 거주 시설 퇴소장애인 ○기준: 소득 기 준없음 ○기타: 주택마련(월세,보증금) 자금 사용	○신청방법: 시설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장소: 시설소재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자치구·동	38	10	11	10	16	10	11
강원	2017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후 1년이 경과된 퇴소장애인 ○기준: 소득기준없음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이내 - 주택마련(월세,보증금)자금사용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지역사회자립 추천서,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기타 자립 관련 증빙 서류 지참 신청 ○신청장소: 시설 소재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자치구 ○기타 : 현장방문 및 신청서류를 통한 대상자의 자립의지 검토 후 지급여부 결정	12	6.5	2	6.5	7	9.1	3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구분	시행 연도	지급 대상	신청 방법	탈시설정착금(1인)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충북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후 1년이 경과된 퇴소장애인 ○기준: 국민기초, 차상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취업, 대한진학, 자립홈 입소 등 자금 사용 - 1년이내타시설재입소시보조금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장애인거주시설 → 시·군 신청 	17	4	4	5	5	5	8
충남	-			-	-	-	-	-	-	-
전북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후 1년이 경과된 퇴소장애인 ○기준: 소득기준없음 ○기타 : 임대보증금 및 생활용품 구입 등 ○지원제외 : 공동생활시설(그룹홈) 입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시설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 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장애인거주시설 → 시·군 신청 	12	10	3	10	7	10	2
전남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기준: 소득기준없음 ○기타: 주택마련(월세,보증금)자금, 생활 가전제품 구입 등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시설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장애인거주시설 → 시·군 신청 	6	10	1	10	3	10	2
경북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관내 생활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 후 퇴소 한 만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장애인 ○기준: 국민기초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월세,보증금)및생활용품사용 - 3년간 타용도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시설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장애인거주시설 → 시·군 신청 	22	10	5	10	5	10	12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구분	시행 연도	지급 대상	신청 방법	탈시설정착금(1인)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지원 금액	지원 수 (명)
경남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퇴소장애인 ○기준: 국민기초 ○기타: 주택마련(월세,보증금)자금,생활가전제품구입등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시설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장애인거주시설 → 시·군 신청 	12	5	-	10	5	10	7
제주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1년이상 거주한 18세이상 퇴소장애인 ○기준: 소득기준없음 ○기타: 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퇴소 자립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재직증명서 또는 혼인 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주택 확인서류 ○신청장소: 관할 시청(구) 신청 	12	-	-	10	2	10	10

(3) 노동을 통한 소득지원

○ 지난 3월 26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 ▲ 기업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 및 현장 컨설팅 제공, ▲ 문화예술 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등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를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 정책 과제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고 발표하였다.

○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의 협의하여 제시한 장애인고용대책의 자세한 내용¹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민간부문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 및 유지를 위한 지원강화 방안

▶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 제공

▶ 기업 훈련-고용을 연계 지원하는 지원고용 사업 확대, 민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완충적 일자리 모델 마련 등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 확대

▶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 확대,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

▶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장애인 친화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모색

(2) 장애인 공무원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

▶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하여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 확대

▶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하여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한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확대

▶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강화, 인프라 및 경영 개선 등 지원 확대

10)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06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3) 장애인 교원, 이공계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기회 확대

▶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해 초과 선발을 허용,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 확대

▶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확대, 장애인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및 장애인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등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 확대

▶ 4차산업 혁명 대비를 위하여 '장애인 IT특화 맞춤형훈련센터'를 올해 2개소 확충(신설 1, 전환1)하고, 융·복합 직종 훈련과정 강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 추진

▶ 장애유형별 기초·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20년 5개→'21년 15개) 및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인 직업역량 제고

(4) 비대면·디지털, 문화 예술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 집중 개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창출

▶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 장애인 은퇴선수 직업교육도 확대

▶ 4차산업 혁명 대비를 위하여 '장애인 IT특화 맞춤형훈련센터'를 올해 2개소 확충(신설 1, 전환1)하고, 융·복합 직종 훈련과정 강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 추진

▶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업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노동부의 고용대책에는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없다

○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에는 최종증장애인 특히 탈시설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다. 그 원인은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고, 1991년이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는 30년 동안 사용자가 내는 고용부담금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고용기금을 시장 중심의 고용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고용노동부의 시장 중심의 장애인고용정책은 200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이 일부 반영되었지만 그 효과와 실적은 미미할 뿐이었다.

○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일자리를 통해 장애인에 공공일자리¹¹⁾를 제공함

11)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일자리라 불려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으로 일정 정도의 공공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¹²⁾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공공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 매년 고용계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한번 참여한 장애인은 연속적으로 참여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는 장애인 중에서도 능력과 시장으로 이전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을 우선고용하고 능력과 경쟁체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증장애인인 탈시설장애인에게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직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권리협약 27조(노동)에 관한 일반논평 : ‘근로능력’, ‘고용불능’ 개념철폐

○ 2021년3월22일과 24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양일간 간담회를 열고 세계 각국의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CRPD 제27조 근로 및 고용에 관한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8 초안을 논의했다.¹³⁾

○ 위원회 초안에 ‘제27조 1항 a호의 주해(Interpretation of article 27.1(a)’와 ‘당사국의 의무 b호(States parties obligations. b)’ 등에서, 기존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능력’ 또는 ‘고용불능’ 등이 개념 철폐와 노동에서의 “의료적 적합성” 요건 등을 제거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지를 표명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지지 표명은 이 문건에서도 이미 잘 나타나 있듯,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이 겪어 온 임금 차별, 장애인 노동자의 저임금 일자리로의 집중,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등은 모두 이러한 장애인 노동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의 현존 및 노동 불능 개념과 긴밀히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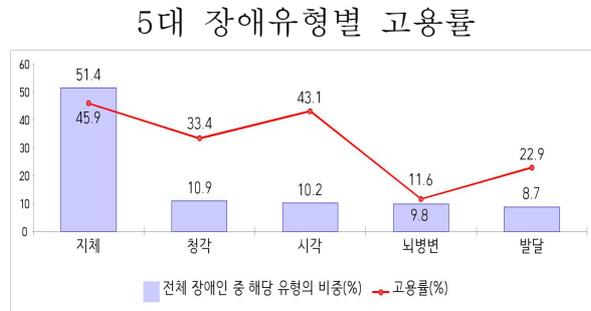
○ 위원회의 초안에 지지표명과 함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소개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 중 ‘근로능력’을 우선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근로능력’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어지는 최종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방식의 공공일자리이다.

12) 2007년 4,990명, 2020년 22,396명, 2021년 24,896명

13) 한국 장애계, CRPD 노동권 일반논평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반영해야”, 비마이너 기사, 2021.3.25.

서울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 목적 :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3대 공공일자리 제공
-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100명 중 72.7명이 비경제활동인구
- 중증장애인 중 뇌병변, 발달 유형의 노동문제는 더 심각
 - 장애특성별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률(19.5%)이 경증장애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체 장애인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시각 장애에서 평균보다 높지만 뇌병변·발달 장애는 현저히 저조하게 나타난다.
 - 5대 장애유형의 고용률은 뇌병변(9.8%), 발달(22.9%), 청각(33.4%), 시각(43.1%), 지체(45.9%)이다.



※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17)

-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에서 적용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문제 해결
-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의 공공일자리
 - ‘권리중심’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목표로 한 중증장애인들의 권리 활동.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통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권리’의 문제. ‘시혜와 동정’을 배격하고, 복지 차원을 넘어선 인권과 권리의 문제.
 - ‘중증장애인기준’은 시장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제되는 경쟁의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활동과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윤을 통해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해야할 공공의 업무(UN장애인권리협약 권고내용의 업무) 내에서 아무리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일지라도 참여하여 가능한 수준의 활동을 기준으로 함께 협업하여 비장애인의 인식개선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공공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 ‘직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공공영역 일자리 직무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구체적 권리, 인식제고(제8조)에 의거해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한 점을 주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강화 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하였으며,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대중에게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하여 공론화하고 교육 시킬 것’을 권고¹⁴⁾

-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 캠페인과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책무를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업무로 수행하는 것을 공공영역 일자리 직무.

-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 (People First),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비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인인권교육(인식개선교육)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직종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직무를 중증장애인지준으로 구성. 구체적 직무는 실적위주, 효율, 생산성의 속도 기준이 아닌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노동 가능·참여 기준과 속도로 직무를 구성.

○ 예산과 참여인원

- 2020년 260명(12억), 2021년 277명(25억)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3대 직종			
방향	목표	직종	재정책임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 비장애인 인식개선 ○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 홍보 및 선전 ○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	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 (People First)	※ 재정지원 일자리
		최중증장애인 활동·참여 가능 기준의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인권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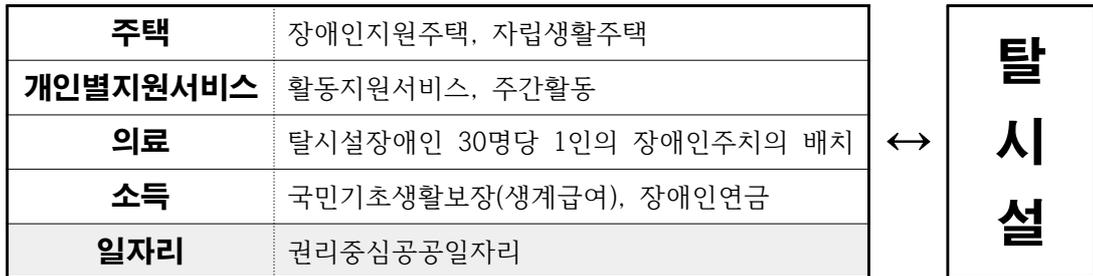
권리중심/중증장애인지준
공공/참여가능수준/협업/지역변화

재활중심의 생산성 기준
시장경쟁, 실적과 효율, 이윤

14)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정부의 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함.

서울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와 탈시설장애인과와의 연결

○ 서울시는 권리중심공공일 자리를 발표하면서 기존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탈시설화추진계획」¹⁵⁾의 탈시설 중요정책과제인 ▲탈시설 정책추진강화 및 전환지원체계개선, 재가장애인 시설입소 예방,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따라 노동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으로 권리중심공공일 자리에 탈시설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지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으로 탈시설 장애인들이 권리중심공공일 자리에 참여함으로 소득이 일정정도 향상되어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권리중심공공일 자리에 참여하면 생계급여에서 일정정도 소득인정액으로 삭감이 되더라도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는 그대로 유지되고, 소득도 주 20시간, 주14시간의 참여에 따라 차등은 발생하지만 소득이 향상된다.

<표10> 2021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계산 세부

구분	시간제 일자리 주 20시간	복지형 일자리 주14시간 / 월56시간
급여 (최저시급적용)	911,240원 (시급 8,720원, 월급여, 주휴수당 포함)	488,320원 (시급 8,720 × 56시간)
소득인정액 2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497,868원 (911,240원 - 20만원) = 711,240원 711,240원 X 70% = 497,868원	201,824원 (488,320원 - 20만원) = 288,320원 288,320원 X 70% = 201,824원
생계비 잔액 (생계비-소득인정액)	생계급여 548,349원 - 소득인정액 497,868원 = 50,481원	생계급여 548,349원 - 소득인정액 201,824원 = 346,525원
총 소득액 급여+생계급여	961,721원 급여 911,240원 + 50,481원 (생계급여 548,349원 -소득인정액 497,868원)	834,845원 급여 488,320원 +346,525원 (생계급여548,349원-소득인정액201,824원)
실질적 소득증가액 총소득-생계급여	413,372원 총소득 961,721원-생계급여 548,349원	286,496원 총소득 834,845원 -생계급여 548,349원

15) 1차 : '13년~'17년(5개년) :탈시설 인원 604명, 2차 : '18년~'22년(5개년) 800명 목표 (계획인원 : 2,315명)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표11>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작년 대비 성과 비교 (2020년 → 2021년)

2020년	2021년
<p>1. 전국 최초로 최종증장애인의 노동의 권리 실현</p> <p>2. 12억 예산, 최저시급 적용, 260명(복지형130명, 시간제일자리 130명), 11개 보조사업자 선정 기관 중 9개 기관 협업단 구성 활동</p> <p>3. 보조사업자 고용장려금 전액 사업비로 사용. 그 중 자부담 4시간 추가 자부담 지원으로 복지일자리 60시간으로 급여향상 및 근로지원인 지원</p> <p>4. 2021년 모든 예산 삭감에도 서울시투쟁 및 국정감사 등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 유지</p>	<p>1. 작년 12억 예산대비 25억으로 예산 증액, 전담인력 수행기관별 1명 인건비(월 2백만원) 및 근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60시간 복지형일자리 보조금에서 배치, 275명으로 작년 260명에서 15명 인원확대, 11개에서 15개 보조사업자 기관 확대</p> <p>2. 전국 확산 노력으로 복지부 장애인 복지일자리 문화예술분야 700명, 경기도 2억5천예산-5개기관 공공일자리 시작</p> <p>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네트워크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지원</p>

항목	2020년	2021년
지원주체	○ 서울시 자체사업	○ 서울시 자체사업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총 인원	○ 260명(시간제 130명, 복지형 130명) - 한 기관당 : 18~26명 - 총 11개소(법인4, 비영리민간단체7)	○ 275명(시간제 158명, 복지형 117명) - 한 기관당 : 14~24명 - 총 15개소(법인5, 비영리민간단체10)
사업기간	○ 2020. 7. ~ 12.(6개월) ※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하여 시행	○ 2021. 4. ~ 12.(9개월) ※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하여 시행
대 상	○ 만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복지일지리는 고3 및 전공과 장애학생 포함) ※ 탈시설 및 최종증장애인(뇌병변,근육,지폐성,중복장애인) 우선참여	○ 만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복지일지리는 고3 및 전공과 장애학생 포함) ※ 탈시설 및 최종증장애인(뇌병변X1점수 최종증기준, 근육, 척수, 지폐성, 발달1급, 중복장애인) 우선참여
총 예산	○ 1,191,000천원(시비전액) - 시간제 790,000천원 - 복지형 401,000천원	○ 2,552,940천원(시비 전액) - 시간제 1,752,880천원 - 복지형 800,280천원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항목	2020년	2021년
지원금액	○ 기관당 116,212,200원 - 인건비 107,538,600원 - 운영비 8,673,600원 (※ 1개소, 26명 기준)	○ 기관당 174,409,830원 - 인건비 158,384,790원 - 운영비 16,025,040원 (※ 1개소, 19명 기준)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운영 ○ 자격 : 서울시에 소재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 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운영 ○ 자격 : 서울시에 소재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고용 장려금	○ 운영기관이 고용장려금 수령 ○ 근로시간 월60시간 이상, 매월 16일이상 근무자 해당 ○ 지급단가(중증여성 80만원, 중증남 성 60만원)와 월 임금액의 60%(시간제 538,596원, 복지형 288,624원)를 비교 하여 낮은 단가 적용(따라서 더 낮은 임금액의 60% 적용) ○ 월 고용장려금액(26명기준) - 월 10,667천원(6개월 64,000천원) ○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이 고용장려금 수령 ○ 근로시간 월60시간 이상, 매월 16일이상 근무자 해당 ○ 지급단가(중증여성 80만원, 중증남 성 60만원)와 월 임금액의 60%(시간제 546,744원, 복지형 410,058원)를 비교 하여 낮은 단가 적용(따라서 더 낮은 임금액의 60% 적용) ○ 월 고용장려금액(19명기준) - 월 9,295천원(9개월 83,650천원) ○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전담인력 인건비	없음	○ 인건비 : 1,913,760원 ○ 운영비(4대 보험료 등) 193,470원 - 1일 8시간, 9개월, 15명 - 개소당 전담인력 1명 지원
직무유형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 장애인문화예술활동, ○ 장애인인식개선강사활동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 장애인문화예술활동, ○ 장애인인식개선강사활동 (※물품생산활동과 판매행위 지양-기존 의 직업재활시설 등 타 일자리와 중복 성 발생)
노동시간	○ 시간제 : 1일 4시간/주20시간 ○ 복지형 : 1일 3시간/주14시간	○ 시간제 : 1일 4시간/주20시간 ○ 복지형 : 1일 3시간/주15시간
노동자 월급여	○ 시간당 8,590원 ○ 시간제 급여897,660원(1인,월,세전) ○ 복지형 급여 481,040원(1인,월,세전) ○ 시간제 운영비(4대보험, 기타경비) - 90,540원(1인,월) ○ 복지형 운영비(4대보험, 기타경비) - 20,660원(1인,월)	○ 시간당 8,720원 ○ 시간제 급여 911,240원(1인,월,세전) ○ 복지형 급여 683,430원(1인,월,세전) ○ 시간제 운영비(4대보험, 기타경비) - 107,200원(1인,월) ○ 복지형 운영비(4대보험, 기타경비) - 75,170원(1인,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항목	2020년	2021년
노동자 수급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인기준 생계급여 527,158원 ○ 소득인정액 = (급여-20만원) X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추가소득 409,298원 - 복지형(56시간) 추가소득 284,311원 - 복지형(60시간) 추가소득 343,583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1인기준 생계급여 548,349원 ○ 소득인정액 = (급여-20만원) X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추가소득 413,372원 - 복지형(60시간) 추가소득 345,029원
직무 지도원	해당안됨	해당안됨
근로 지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60시간 이상 노동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주20시간) 해당 -복지형(월56시간) 비해당 -복지형(월56시간+자부담4시간)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60시간 이상 노동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주20시간) 해당 -복지형(월60시간) 해당

[붙임자료]

UN 장애인권리협약 27조(노동)에 관한 일반논평(Outline for the preparation of a General Comment on Article 27 of the CRPD, The right to work and employment)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의견

I. 서문

1. UN 장애인권리협약 27조(노동)에 관한 일반논평 8(Outline for the preparation of a General Comment on Article 27 of the CRPD, The right to work and employment)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초안을 작성한 위원회에 먼저 감사를 드린다.

2.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초안이 ‘제27조 1항 a호의 주해(Interpretation of article 27.1(a))’와 ‘당사국의 의무 b호(States parties obligations. b)’ 등에서, 기존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 능력’ 또는 ‘고용불능’ 등의 개념 철폐와 노동에서의 “의료적 적합성” 요건 등을 제거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하여 지지를 표한다. 이 문건에서도 이미 잘 나타나 있듯,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이 겪어온 임금 차별, 장애인 노동자의 저임금 일자리로의 집중,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등은 모두 이러한 장애인 노동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의 현존 및 노동 불능 개념과 긴밀히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3. 특히 한국에서는 <최저임금법>,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에 따라 ‘작업 능력평가’라는 근로 능력 평가를 통해, 9413명(2018년 기준)의 장애인들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이러한 권고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27조 1항 b호의 주해: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기존 법률에서 근로 능력’ 또는 ‘고용불능’ 등의 개념 철폐와, 노동에서의 “의료적 적합성” 요건 등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4.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각종 노동의 권리들을 보장하더라도 그것이 한낱 시혜적으로 주어진 경우가 많았던 것 역시, 근로 능력 평가, 노동 불능 등의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 즉 고용부담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장애인들을 결국에는 온전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 혹은 노동자 본인이 전혀 성취감을 가질 수 없는 일자리에 배치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심각할 정도로 침해당해 왔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5. 특히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근로 능력 평가, 노동 불능 개념 등으로 인하여,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보장받지 못해 왔다. 중증장애인들은 노동 시장으로부터 가장 많이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논평의 기초에 동의하는 한편으로, 이 기초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논평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I. 제27조 g호,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의 주해에 대한 전장연의 의견 (Comments on “Interpretation of article 27(g)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ublic sector”)

6. “제27조 g호,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의 주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일부 공공 부문 당국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 경로와 고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러한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장애인은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합리적인 편의를 통해 혜택을 받아야하지만 특수 채용 절차를 통해 지원할 수도 있다.”

7. 이는 장애인 일반에게 공공 부문에서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분명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다소 교육 수준이 높고, 기존의 효율성, 생산성 기준에 비해서도 딱히 그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경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 문구를 통해 분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이 일반적 채용 과정을 통해서건, 특수 채용 과정을 통해서건 공공 부문에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으려면, 우선 중증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들이 공공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중증장애인들은 이 문구만으로는 실질적인 권리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8.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그동안 비장애인들이나 경증장애인들에 비해 교육을 잘 받지 못해 왔고, 문화적 접근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 특성상 비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들보다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공공 차원의 일자리들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장애인 역시 사회복지, 자선, 그리고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을 뿐, 일할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비롯한 자기 결정 권리를 가진 주체로 여겨지지 못했다. 사회에서 배제되어온 위치와, 비가시화의 결과, 그리고 널리 퍼진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를 비롯한 인권을 온전히 향유하지 못했다”는 <장애인의 평등한 고용 기회 보장을 위한 국내법 제정 ILO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조건 탓에 노동에서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에서 각종 공공기관들은 본인들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다”는 사실을 꼽기도 한다. 고용부담금 납부를 피하기 위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더라도,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일자리”에, 그리고 안정된 고용의 질을 유지하기 힘든 일자리에 그들을 배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9. 그러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하여 기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경증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23조 1에 명시되어 있듯,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그리고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중증장애인 역시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ILO 헌장 역시, 2조 (가)와 (나)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해 두었다. “(가) 모든 인간은 인종·신조 또는 성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엄과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달성은 국가적 및 국제적 정책의 중심목적이어야 한다.”

10.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 노동 시장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선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할당제(의무고용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경증장애인 고용에 비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공기관들은 <세계인권선언>과 <ILO헌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동으로부터 가장 많이 배제되어온 중증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1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러한 제안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A규약)> 제6조 1과도 분명 부합한다. 한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A규약)> 제6조 2는 개인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서 완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다.

12. 한편 공공 차원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에 먼저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국내적 및 국제적 정책과 조치, 특히 경제적·재정적 성격의 정책과 조치는 이러한 관점(인종·신조 또는 성에 관계없이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이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국가적 및 국제적 정책의 중심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또한 근본목표 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채택되어야 한다.”는 ILO 필라델피아 헌장 2조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13. 공공기관의 의무 중 하나는 ‘공공적인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질화 하는 것, 시민들로 하여금 공익적 활동을 장려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공공적인 가치’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장애인 권리 침해 등 각종 인권 침해 사안들을 발굴하여 향후 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교육을 공공 차원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 공공기관들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공공 기관은 이 활동을 전담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고용해야만 할 것이다.

1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판단하기에, 중증장애인들은 이러한 종류의 노동을 수행하면서 충분히 긍정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기관은 이러한 형태의 ‘공익적’ 효과를 갖는 일자리를 더 많이 개발하고, 이 일자리에 적정한 수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만 한다.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겪어온 경험은 이러한 형태의 일자리에 마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지금껏 노동을 해오지 못한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노동 능력 평가와 노동 불능의 편견을 깨뜨리는 데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15. 한편, 이 새로운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 개발을 요구할 뿐, 비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과 분리된 노동 환경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이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협조하여 노동을 수행하며, 다른 직무를 맡았다고 해서 인사 상에서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16. 실제로 대한민국 서울시는 2020년 7월부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라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 UN CRPD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UN CRPD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노동을 하는 중증장애인들을 노동자로 고용했다. 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 상당수는 보통 최중증으로 분류되며, 지금껏 임금 노동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나, 이 일자리의 3대 직무, 예컨대 문화예술활동, 인권강사활동,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들 자신의 삶은 물론 그의 가족들의 삶의 질 역시 상당히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활동은 혁신적인 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 직무들에는 중증장애인만이 고용될 수 있음에도, 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근로지원인 및 비장애인 일자리 사업 담당 노동자들, 그리고 서울시 비장애인 공무원 노동자들과의 협조 속에서, 즉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적 노동 환경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

17.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노동권 보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정감사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당사자의 발언은 물론이고, 장철민 의원의 이 일자리에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대한 평가에서도 잘 나타난다. 장철민 의원은 당시 “어떤 생산물에 부가가치를 투여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다”라면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은 물론, 공공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노동 개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일자리에 대한 이러한 각종 긍정적 평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이 일자리를 2021년부터 경기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18. 만약 이 논평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유사한 형태의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그러면서도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를 장려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다면, 그동안 노동권으로부터 가장 먼저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으로,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적 노동 환경을 구축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향상 및 공공적인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 “제27조 g호,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의 주해”는 또한 “공공 근로 프로그램은 공공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고용 집약적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농촌 또는 불우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고용 (일반적으로 연간 근무일 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20.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이러한 종류의 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 이러한 종류의 일자리가 복지 일자리 등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복지 일자리 상당수는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에 힘든 직무로 구성되어 있다. 더 나아가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 대개는 그 조건이 매우 불안정한데다가, 그 직무도 대부분이 단순 육체 노동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직무 선택의 자유를 심각할 정도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직무 다양성의 부재는 장애인 당사자가 노동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기 힘든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1. 따라서 기존 근로 프로그램들의 일자리를 안정화 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근로 프로그램 일자리의 직무 자체를 더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 일자리 직무의 다양화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더 확장해 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성취감을 얻게 되는 데에도 충분히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22. 앞서 언급했듯,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당국과 시의 차원에서,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존 일자리 사업이 실현하지 못했던 직무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향상 활동들 혹은 전반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중증장애인 당사자 본인의 직무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삼는 공공일자리의 확대는,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근로 프로그램의 질을 더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3. 따라서 이 논평의 “제27조 g호,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의 주해”에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권리중심의 일자리들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시킨다면, 개발도상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근로 프로그램 역시 중증장애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개발도상국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근로 프로그램들은, 이 프로그램 노동자들을 노동 불능한 존재로 낙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무 개발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공공 근로 프로그램’을 넘어서, 공공의 일반적 채용 과정 혹은 특수한 채용 과정 차원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해야 한다.

Ⅲ. 당사국의 의무(States parties' obligations)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의견

24. 그러나 사실 이 논평의 전체 기초가 효과적으로 각 국가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의무(States parties' obligations)’에 “국가의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 개발 의무’ 및 시혜적 성격의 일자리를 넘어서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일자리 마련’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국의 의무’에는 “‘존중’ 차원은 주로 공공 부문의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맥락과 공공 고용 서비스 및 직업 훈련과 같은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해야 하는 다양한 공공 정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임을 명시하고 있다.

25. 그런데 “국가의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 개발 의무’ 및 시혜적 성격의 일자리를 넘어서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일자리 마련’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기초와 분명 일치하며, ‘States parties' obligations' b) I. “특히 장애 또는 여러 사유에 의한 차별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과 그 정신이 부합하기도 한다.

Ⅳ. 결론

26. 따라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논평의 “제27조 g호,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의 주해”와 “당사국의 의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 개발에 대한 국가의 의무’
- 시혜적 성격의 일자리를 넘어선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일자리 마련’

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당국은 물론 국내외 장애인 단체들, 국제 장애인 단체들, UN 장애인권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향후에도 장애인의 노동권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토 론

-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유은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자기주도지원부 부서장)
- 권오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 최해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 종합토론



토 론

개인별 탈시설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

오욱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두 발제자가 제시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방안과 소득·노동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함. 이에 대해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 수단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탈시설 지원 주체와 지역(지자체)의 문제

○ 발제자가 제시한 탈시설지원센터와 지원 인력(전환코디네이터, 전환플래너, 주거 코치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함. 다만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로 지원 주체와 지역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탈시설 지원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 전환 단계, 정착 단계에서 지원의 주체와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해야 함. 그런데 거주시설의 소재지, 전환주거의 소재지, 탈시설 장애인이 최종적으로 정착을 희망하는 지역, 그리고 최초 정착을 한 이후 추가적인 주거 이동을 하는 지역이 모두 다를 수 있음.

○ 탈시설지원센터가 직할 지역 조직을 갖춘 전국 조직이고, 탈시설 지원에 있어 예산 등 전권을 가진 주체라면 이러한 지역 불일치가 문제가 크지는 않을 것임. 하지만 전국 조직을 갖춘 별도의 독립된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것의 현실성, 많은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상황,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탈시설 지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 됨.

○ 최근 수년간 지역복지 전달체계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탈시설 지원체계 또한 이러한 지역 중심 전달체계와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지역이 변동될 경우 자치단체 간 지원 연계에 대한 책임을 사업 지침에서 최대한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2. 탈시설 지원 인력의 종류와 서비스 급여화

○ 발제문에서는 탈시설 지원 인력을 크게 전환코디네이터, 전환플래너, 주거코치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발제문을 토대로 이해하자면, 전환코디네이터는 시설 거주인의 탈시설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정보를 제공하여 탈시설 전환 이전 단계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전환플래너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지원과 이행 모니터링이 주된 역할로 부여되고, 주거코치는 지원주택으로 자립할 경우 주거를 단위로 밀착 생활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지원 인력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탈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지원 인력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누구에게 요청할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음. 탈시설 지원 대상이 주로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지점일 수 있음.¹⁶⁾

○ 개인적으로는 지원 인력은 크게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인력과 주거를 중심으로 밀착 생활지원을 하는 인력의 두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함.

○ 또한 이 경우 밀착 생활지원은 급여화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때 이러한 지원을 급여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탈시설지원센터 혹은 자치단체에서 지원 인력을 직접 지정·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급여를 신청하고 이를 바우처 등의 방식으로 지원 인력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물론 이러한 밀착 생활지원을 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지원인력의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함.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는 초기에는 지원 인력을 직접 지정·파견 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이후에 지원인력의 자격이 체계화되고 공급 수준이 충분히 확충된다면 급여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임.

3. 신속 자립이 가능한 경우를 위한 Fast-track 고려

○ 발제자가 제시한 정교한 탈시설 지원체계는 현실화될 경우 자립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외부의 시선에서는 자립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을 가지는 장애인까지도 성공적으로 지역사회 정착이 가능할 만큼 체계적이라고 판단됨.

16)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중 약 80%가 발달장애인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다만 실제로 시설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상담, 평가,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임. 적절한 주거가 마련되고 기존의 지역사회 서비스 몇 가지만 이용하더라도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이들을 위해 일종의 Fast-track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불필요한 전환 주거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마찬가지로 완전한 탈시설 지원체계를 하나의 준거틀로 사용하되 당사자의 선호와 의지에 바탕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초기 정착을 위한 소득·자산 지원

○ 두 발제자가 모두 언급한 것처럼 현재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초기 정착에 필요한 소득·자산 지원이 부족하고 지역간 격차도 큰 실정임. 다만 발제문에 제시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개편(예를 들어 표준소득)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논의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기본 원리에 배치되는 측면도 있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임. 여기서는 탈시설 장애인에 특화된 자산 지원으로 자립정착금, 그리고 소득 지원으로 자립수당을 논하고자 함.

○ 우선 자립정착금 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탓에, 지역간 격차가 크고, 제도 자체가 부재한 지역도 있으며, 예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시설 소재지와 정착 지역이 다를 경우 어느 곳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하고자 함.

- 첫째, 자립정착금의 용도는 생활용품 마련의 용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많은 지역에서 자립정착금을 주택자금의 용도로도 지원하는데, 주거 마련은 임대주택, 지원주택, 임차자금 장기대출 등으로 별도로 지원하고 자립정착금은 초기 정착지에서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집기 등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중앙정부에서 자립정착금의 최소수준을 설정하고, 지급해야 할 지역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지역간 격차와 지급주체의 불명확성은 과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였는데, 현 정부는 최소기준(500만원)을 정하여 광역자치단체가 반드시 최소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설 소재지와 정착 지역이 다를 경우에는 시설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있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 셋째, 자립정착금은 예산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격 프로그램으로 설정해야 함. 자격 프로그램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수급 자격을 갖춘 추가 수급권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립정착금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으로 자립수당을 제안하고자 함.

- 자립수당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초기 단계에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임. 지역사회 정착 초기 단계에 일상생활을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이라도 완전한 자립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한 급여임.

- 이러한 자립수당은 국내에서도 다른 분야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됨. 주로 성인 전환기에 탈시설이 이루어지고 ‘자립’,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점에서 탈시설 장애인과 보호종료아동은 유사성이 큼.

5. 탈시설 장애인의 고용 지원

○ 탈시설 장애인 중에서는 거주시설에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여 탈시설을 원활하게 진행한 경우도 있고, 탈시설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음. 그만큼 고용이 탈시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개인적으로 탈시설 장애인 지원에 있어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평생을 시설에서 살아온 장애인에게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생존과 자립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 될 수 있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타인이 판단하는 ‘최선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임. 고용을 통한 자립보다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다만 발제자가 제안한 ‘권리중심’ 일자리 지원은 탈시설 장애인은 물론 경쟁 노동시장에서 소득 능력이 부족한 일부 장애인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경쟁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일자리가 자본 가치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또한 그 사회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유급 고용의 형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6. 탈시설 지원체계의 장기적 역할

○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장애계나 학계에 제안하는 탈시설 지원체계는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이러한 지원체계가 장기적으로는 역할을 전환하여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함.

○ ‘탈시설’ 지원체계는 장기적으로 ‘탈가족’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이는 시설 보호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그 대상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대표적인 사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발달서비스’(Developmental Service)를 제시할 수 있음. 1974년 탈시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로 시작된 발달서비스는 시설 거주인이 감소되면서 성인기에 도래한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능을 병행했으며, 2009년 모든 대규모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이 폐쇄된 이후에는 기능을 완전히 전환하고 현재도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탈시설화 정책의 추진이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고려해서라도 ‘탈시설화’ 정책의 장기적 추진 과정에서 ‘탈가족화’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며, 현재 제시된 지원체계가 그러한 역할을 병행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토 론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 사람중심과 지역중심 실천을 통한 보통의 삶 지원 -

유은일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자기주도지원부 부서장

우리나라는 탈시설과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2011년 신축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을 시작으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서 추진과제로 탈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장애인의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내용과 이용자 중심, 소규모화를 추진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에 대한 내용을 세부계획으로 수립하였다.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후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하고,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 정착 지원모델’ 개발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내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탈시설 추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 실정이다.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더 요구된다. 당사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탈시설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을 시설에서의 ‘준비단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단계’, 지역사회로의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볼 때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탈시설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본인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탈시설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개인별지원계획을 실제 실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2019,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의 촉진 요인으로 중요하게 도출된 내용 중 지역사회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접근성(장애 친화적 장소), 지역사회 참여 및 교류(외부 활동을 통한 지지망 구축, 새로운 소속감 형성)이다.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의 저해 요인으로 도출된 내용에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요인은 지역사회 접근성(이동 수단 확보의 어려움), 지역사회 인식(지역 주민의 입주 반대), 지역사회 참여 및 교류(비장애인과의 금전적 문제)라는 세부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으로 살펴 볼 때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의 역할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민간의 역할은 지역사회 이웃을 연결하여 시민으로서 친숙한 관계 속에서 지지망을 맺고 소속감을 형성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별 지원계획에는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상의 기본생활 보장을 시작으로 결국 당사자가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게 낮 활동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사회 내 자원 연결이 필요하다. 진정한 장애는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관계 안에서 오는 행복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당사자의 개별적인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시민, 이웃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4차 정책토론회 :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별 지원계획에는 가족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당사자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지역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있어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 필요한데 당사자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당사자가 거주시설에서 나와서 최선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잘 아는 것로부터 지원은 시작된다. 개인별지원계획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 ‘당사자는 어떻게 살고자 할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당사자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당사자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고 경청하려고 노력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사자 중심의 주도적이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람중심계획(PCP) 실천을 하고 있고, PCP 실천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당사자 참여를 위한 PCP 접근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당사자가 본인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자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청해야 한다.

우리 복지관은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 이라는 미션 아래 3대 실천전략(사람중심의 실천이 있는 복지관,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복지관, 글로벌리제이션을 실행하는 복지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사람중심 실천으로 탈시설 장애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① 시민 옹호, 스몰 스파크, 주민 모임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발생 시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서울시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종합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2018년부터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재활의학전문의, 임상심리사가 다영역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입주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하고 있다. 특히 조기 노화로 인해 건강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령 장애인의 의료 상담은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③ 복지관 다영역 직원으로 구성된 탈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에서는 사람중심 실천(PCP)을 하고 있으며, ISP 컨설팅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지원위원회 회의, 퇴소지원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면서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④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통해 지역사회로 통합할 수 있도록 건강 컨설팅(건강상담)과 낮활동 지원(평생교육 및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의미 있게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아하는 활동을 구성하고 자원을 연결하여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⑤ 도전적 행동으로 긍정행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생활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최종증 낮활동지원사업(챌린지)의 경험을 토대로 긍정행동지원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전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지원방법을 함께 찾고 있다.

탈시설 장애인 지원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물론 정착 단계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현재 많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 옹호인 등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낮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민간 협력이 더욱더 잘 추진되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 론

권오경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토 론

최해리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종 합 토 론

온라인 참가자 질의 응답

부 록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68인)



